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국외출생,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 또는 “다”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래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계산례 : 뒤쪽 참조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가)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2)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가)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예 : 4년제 학사과정은 24세, 2년제 석사과정은 26세)]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나)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 다만, 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위 가)의 상한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다)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업 등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가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26. 6. 30.(산정일) → '25. 7. 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제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합니다.
예 1) '25. 7. 1.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 '25. 7. 1.~'26. 6. 30.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